

의안번호	2206882
의 퇴 인	김건 의원
회 답 일	2025.1.22.
추계번호	24D594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의2 (대남방송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등) 제1항 및 제4항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 결정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항 및 제4항)	재량규정
2	안 제27조의2 (대남방송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등) 제2항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소음 실태 파악 및 대남방송소음피해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음(제2항)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대상·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7조의2(대남방송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등) 제1항 및 제4항 신설	미대상: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주요 소음 피해 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경기도 파주시·김포시 일부 지역이며,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음피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피해주민 심리상담 및 회복 지원, 소음피해 저감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1]을 참조
2	안 제27조의2(대남방송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등) 제2항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접경지역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안 제27조의2 신설)

- 현행법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이나 민자유치, 고용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대남방송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주요 소음 피해 지역은 강화군(강화읍, 교동·양사·송해면, 약 22,000명)¹⁾ 및 경기도 파주시·김포시 일부 지역이며,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음피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피해주민 심리상담 및 회복 지원, 소음피해 저감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임

※ [참고자료 1]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동향 및 지원대책

※ [참고자료 2] 강화군 주요 피해지역

□ 개정안의 소음 자동측정망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음측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환경부 예산으로 2025년도에 5개의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시행되어 추가로 소음측정망을 설치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²⁾

- 환경부에 따르면 강화군의 29개 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아 소음측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강화군의 송해면 2개, 교동면 1개, 양사면 1개, 강화읍 1개 지점에 소음·진동관리대책 내역사업³⁾ 예산으로 2025년도에 5개의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예정임
 -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측정망 1대 설치 단가는 1,520만원임⁴⁾

1) 4개 읍·면 인구 29,954명 중 소음 도달 범위의 주민등록인구수로 산출

2) 최근 북한은 대남 소음방송 시설을 증강하고 있으며, 인구밀집지역으로 방송 방향을 조정하여 소음 피해 지역이 확대될 경우 소음측정망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3)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생활공해관리(1633-321)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임

4) 환경소음 측정기기, 전기공사 설계용역비, 측정기기 설치 전기공사 비용을 포함한 비용이며, 10대 설치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 다만,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 시설 확대 및 방송 방향 조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될 소음측정망의 설치 지점 및 설치 대수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곤란하며, 피해 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은 후 설치 지점을 선정해야 하는 등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

[참고자료1]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동향 및 지원대책⁵⁾

□ 소음방송 피해지역 동향

- 최근 북한은 대남 소음방송 시설 증강하고, 인구밀집지역으로 방송 방향을 조정하여 소음 피해지역 확대 우려
 - (소음방송) 기피한 음향(사이렌+북·장구+바람 소리 등)/ 65dB ~ 최대 85dB⁶⁾
 - (지역/인구) 강화군(강화읍, 교동·양사·송해면), 경기(파주·김포시 일부)
- ※ 북측 백마산 확성기 1기 추가설치(3→4개소)로 피해지역 확산(5천명→22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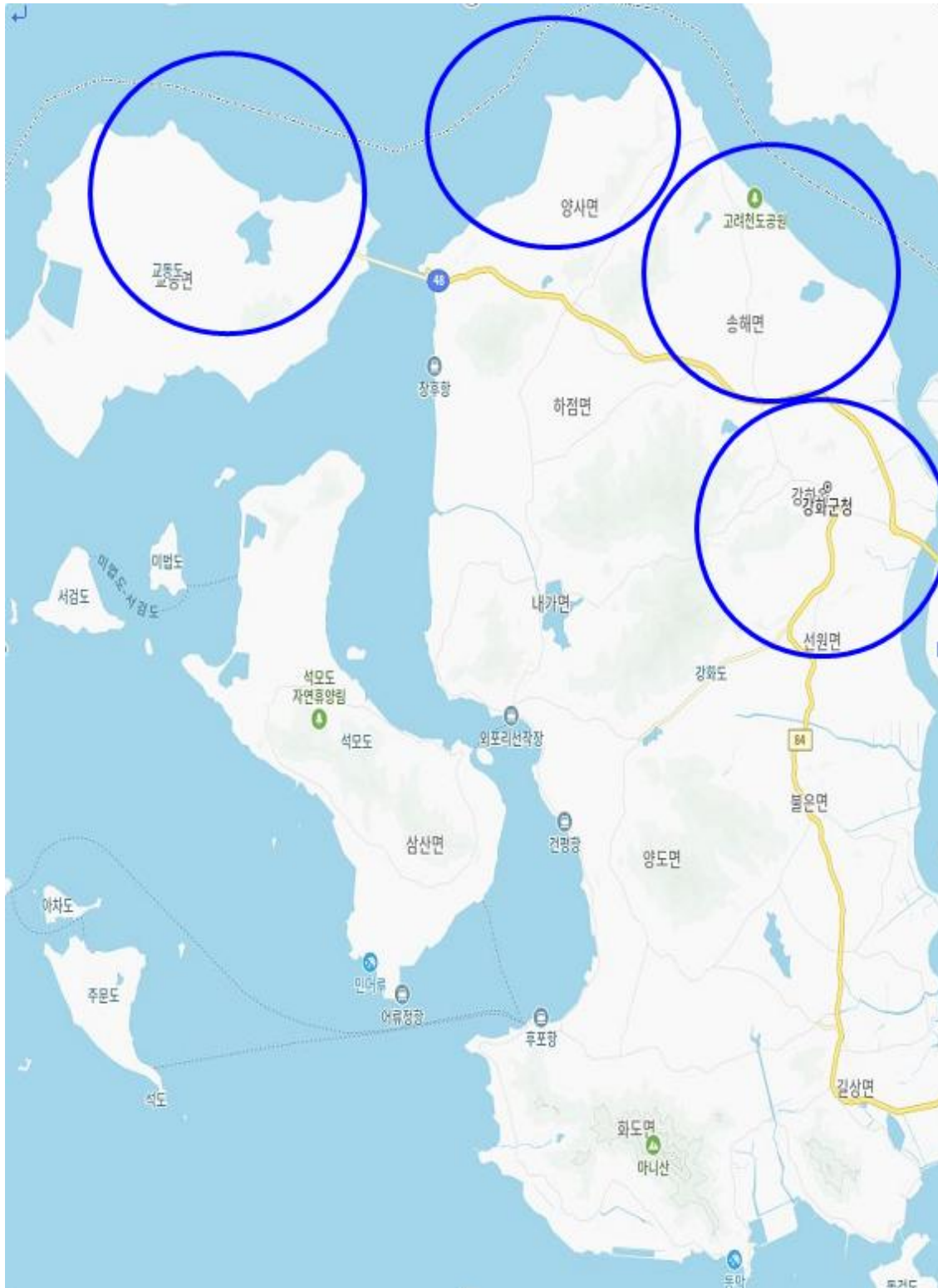
□ 우선 지원대책

- 소음피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피해조사) 지자체·軍(해병대) 합동으로 실질적인 주민 피해 파악
 - (소음 측정) 소음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소음 측정*(市 보건환경연구원)
(기간) 10.16. 11시~10.17. 15시 / (지역) 강화군 송해·양사·교동면 6개 지점 / (결과) 송해면 생활 소음기준 초과, 양사·교동면은 기준 이내
 - ※ (기준) 아침·저녁 65dB, 주간 70dB, 야간 60dB
 - (소음측정망 구축) 피해지역 3개 면에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 실시간 소음 측정 및 측정 자료 관계기관 공유(환경부, '25년 사업)
- 피해주민 심리상담 및 회복 지원
 - (심리상담) 피해 주민의 심리상담과 회복 지원을 위해 마음건강버스 투입(인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불안·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검사(강화군)
 - (가축피해 예방) 가축 유사산 예방을 위해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10.4.) 및 축산 농가 방역 홍보*(강화군)
 - * 가축 폐사, 유사산 등 의심 시 즉시 신고 요청
- 소음피해 저감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 (소음피해 저감) 소음피해 감쇄 지원 + 소음 감쇄 방안 연구 병행
 - 소음피해 가구 대상 방음창* 설치, 학생 대상 소음차단 이어폰** 지원(인천시, '25년)
 - * 900만원 × 35가구 ≒ 3억원(송해면 당산리)
 - ** 4.2만원 × 2,370명 ≒ 1억원
 - ※ 방음창은 인천시 예비비, 이어폰은 2025년 예산 활용
 - 대북 소음방송 피해 저감 방안 지속 연구(국방부)

5)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6) 「소음·진동관리법」 상 규제기준: 주간(07~18) 50~70dB, 야간(22~05) 40~60dB

[참고자료2] 강화군 주요 피해지역⁷⁾



7) 행정안전부 제출자료